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6 제8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 통합

형법상 명예 훼손죄와 인터넷 명예 훼손죄

지문 평가

(가)에서 설명하는 '명예 훼손죄'와 (나)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인터넷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충 보면 쉬운 지문이지만, 뜯어볼수록 어려운 글이니 제대로 독해해 보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법학 – 명예 훼손에 관한 형법의 조항
표현의 자유, 민사상 손해 배상, 형사 고소, 명예 훼손죄, 사실, 공연히 적시, 위법성 조각 사유

(나) 사회 – 법학 – 인터넷 명예 훼손죄
인터넷,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명예 훼손죄, 비방할 목적, 2002년 헌법 재판소, 공중파 방송, 표현의 쌍방향성

(가)문단 1 두 기본권의 충돌

1)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헌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도 중시하여 언론·출판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기본권의 충돌을 바라보는 여러 입장이 있는데, ……

➡ 언론·출판에 의해 자유롭게 의사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언론·출판에 의해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 문제는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고 어디까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겠다.

2) ……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이 지문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문장이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이를 형법상의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겠다.

(가)문단 2 형법상 명예 훼손죄의 성립 요건

1) 사실 적시에 의해 명예 훼손을 당한 이는 명예를 훼손한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 명예 훼손을 당한 개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문단1–2)를 고려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더 중요하겠다.

2) 명예 훼손에 관한 형법의 조항에 따르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실'**은 주관적 평가인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과거나 현재에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

➡ 명예 훼손에 관한 형법의 조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 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이때 주관적인 의견이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이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3) …… **'공연히 적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어떠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한다. 특정될 수 있는 개인에게만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다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어 처벌하지 않고 있다.

➡ 다만 개인의 명예에만 주목할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문단1–1)].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단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 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말이다.

5) 물론 적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강한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된다.

➡ 4)의 경우처럼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중 처벌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 **주목** 특히 '허위의 사실'에 주목하자. 그것이 허위라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문단2–2)], 그래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거다.

(가)문단 3 명예 훼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이와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 처분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형법에서의 명예 훼손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 있다.

맥락 짚기 문단1–2)에서 언급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대목이다.

➡ 문단2–1)을 떠올려야 한다. 분명 '민사상 손해 배상'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굳이 형법상에서도 처벌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다.

2) 이 입장에 따르면 손해 배상 청구 외에도 출판물에 대한 반박이나 정정 보도 청구 등의 민사적 대응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고, ……

➡ 1)의 '민사적 구제 수단'에 대한 상술이다. 설령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어도 이렇듯 민사적 구제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형법에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3) …… 무엇보다 형법에서의 조항은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 1)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에 대한 상술이다. 형법에서의 명예 훼손에 관한 조항 때문에 언론·출판이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4) 그럼에도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액이 현저히 적어서 손해 배상 청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

➡ 2)에 대한 반박이다. 민사적 대응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딱히 유용하지 않다는 거다.

5) ……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가 폭넓게 적용된 판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에서의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3)에 대한 반박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문단2–4)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을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6)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시한 것이 사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문단2-4]. 이건 전혀 특수한 일이 아니다.

7) …… 행위자가 행위 시에 허위의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그 행위를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하다.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문단2-4에 따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경우에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만 충분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거다.

8) 허위의 사실 그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나[→ 굳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할 가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임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할 경우 추후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종합하자면 (가)의 논지는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긍정하는 쪽이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문단 1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성립 요건

1) **인터넷**에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인터넷 명예 훼손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맥락 짚기 (가)와 대비하여 이해하자. (가)에서는 '형법'상의 명예 훼손죄를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에서의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다루고 있다.

➡ 아무래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은 전파성이 어마어마한 만큼[→ (가)의 문단2-5)에서의 가중 처벌 요건], 별도의 법에서 명예 훼손을 따로 취급하나 보다.

2) 이렇게 신설된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보통의 명예 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

➡ 인터넷 명예 훼손죄와 (가)의 형법상 명예 훼손죄의 공통점이다. 명예 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이런 내용은 (가)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기에 더 유의했어야 한다.

3) …… **'비방할 목적'**, 즉 해를 끼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인터넷 명예 훼손죄'와 (가)의 '명예 훼손죄'와의 차이점이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다.

➡ 헷갈리지 말자. '비방할 목적'은 형법상 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요건이었지[(가)의 문단2-5)],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아니었다.

4)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표된 내용과 그 성질, 해당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이루어진다.

➡ '비방할 목적'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이렇게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5) 단, 해당 공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본다.

➡ 사고의 방향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 즉,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6) 또한 비방할 목적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 그렇겠다. 형법상 명예 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명예 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명예 훼손죄	인터넷 명예 훼손죄
피해자 특정	성립 요건 ○	
사실 적시	성립 요건 ○ [→ 허위의 사실도 해당]	
비방할 목적	성립 요건 × [→ 가중 처벌 요건]	성립 요건 ○
공공의 이익	성립 요건 × [→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 요건 × [→ 비방할 목적 부인됨]

➡ 다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명예 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조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닌, 즉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일 수밖에 없겠다. 이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

(나)문단 2 인터넷 명예 훼손죄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드러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각각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명예 훼손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 몇 년인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이는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일 거다.

2) 이와 같은 가중 처벌의[→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현행 규정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맥락 짚기 개념 중심의 서술에서 관점 중심의 서술로 전환되는 대목이다.

➡ 그런데 이러한 가중 처벌이 과연 정당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는데……

3) **찬성론자**들은 쌍방향성이나 자율 규제 가능성 등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사회적 유해성과 심각성에 더 주목한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인터넷의 특수성[→ 가중 처벌을 안 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유해성과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4)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의 의사소통 기능[→ 쌍방향성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인터넷 명예 훼손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처벌 규정을 둔 것은 관련 부처의 입법 편의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비판의 핵심을 잘 파악하자. 이미 형법에서 명예 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법으로 처벌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다.

5)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형법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을 가중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가)의 문단2-5)의 경우처럼 그냥 형법상에서 가중 처벌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다.

(나) 문단 3 2002년 헌법 재판소의 입장

1) 한편 **2002년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을 공중파 방송과 비교하며 그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경고한 바 있다.

➡ 문단2의 반대론자에 가까운 입장의 판례이다.

2)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공중파 방송**은 전파 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의 통제 능력 결여 등으로 인해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 매체보다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

➡ 한마디로 인쇄 매체[→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 훼손죄로 규제된다.]와 비교했을 때 공중파 방송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3) 반면 인터넷은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매체이므로, 인터넷을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다.

➡ 이는 (가)의 문단1-1)에서부터 강조한 대로, 명예 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장하려다가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13] 인문

괴델 문장과 인공 지능의 불가능성 논증

지문 평가

각 철학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입장의 논증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 자체를 잘 읽은 학생들에게는 수월했을 테고, 지문을 많이 헤매면서 읽었다면 [지문 분석]의 흐름을 적극 참고하여 충분히 익혀 보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인공 지능, 괴델 문장

튜링, 튜링 머신, 튜링 테스트, 약한 인공 지능, 강한 인공 지능, 서얼, 중국어 방 논증, 괴델,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 산수, 산수의 형식적 이론 체계, 형식적 증명 규칙, 괴델 문장, 데이비스

문단 1 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

1) 튜링은 **'튜링 머신'**이라 불리는 계산 기계를 설계하면서 기계가 인간과 같은 사유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탐구해 보자는 얘기다.

2) 이 물음은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한 명의 인간과 인간을 모방한 기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이들과 문답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인 **'튜링 테스트'**와 같다.

➡ 인간 A가 벽 너머에 있는 인간 B와 기계 C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게 바로 '튜링 테스트'이다.

3)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 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 즉 인간의 사유 및 언어 능력과 구별되지 않는 작용을 보이는 기계를, ……

➡ 앞서 설명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약한 인공 지능'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더 나아가……

4) …… **'강한 인공 지능'**은 의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능력을 실제로 갖는 기계를 의미한다.

➡ '강한 인공 지능'도 존재한단다. 강한 인공 지능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 즉 인공 지능이라면 공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으나, '약한 인공 지능'의 경우 인간과 같은 사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작용을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약한 인공 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많지만, '강한 인공 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철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산 기계'는 가능해도,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계산 기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얘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2 서얼의 중국어 방 논증

1) '강한 인공 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반박하는 논증[→ 계산 기계가 실제로 인간과 같은 사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논증]으로 (서얼)이 제시한 **'중국어 방 논증'**이 있다.

➡ 논증이 제시될 때에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에 의해 그와 같은 결론에 도출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고 실험에 기초한 이 논증에서 중국어 방이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방을 말한다. 중국인이 중국어로 작성한 물음 카드를 방 안에 들여보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방 안의 '갑'이 중국어 규칙 책자를 참조하여 기계적으로 대답 카드를 만들어 방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하자.

➡ 핵심은 '기계적으로'에 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겉으로 잘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규칙 책자를 근거로 하는 기계적 절차의 결과이다.

3) 이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어에 유창한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갑'이 중국어의 문답이 지닌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중국어를 할 능력을 실제로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다.

➡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갑'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

4) 서얼에 따르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약한 인공 지능'은 가능할지 몰라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기계가 '강한 인공 지능'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이제 '중국어 방 논증'에서 방 안에 존재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고 상상해 보자. 해당 기계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즉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한 인공 지능'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문단 3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

1) 모든 인공 지능을 부정하는 입장은 (괴델)에 의해 증명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근거로 제시한다.

맥락 짚기 논의의 초점이 '모든' 인공 지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이번에는 아예 약한 인공 지능의 실현 가능성도 부정하려는, 즉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2) 자연수에 관한 이론을 **'산수'**라 하는데, '산수'를 이루고 있는 참인 진술들에 대해 그 참을 증명하려 할 때 사용되는 공리들과 형식적 증명 규칙의 체계를 **'산수의 형식적 이론 체계(F)'**라 하자.

➡ 표현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표현을 받아들이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자.

3) 여기서 **형식적 증명 규칙**이란 '튜링 머신'과 같은 계산 기계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적 절차와 같은, 증명을 위한 논리적인 규칙을 말한다.

➡ '기계적 절차'라는 표현에서 문단2-2)의 '기계적으로 대답 카드를 만드는 상황'을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즉 '형식적 증명 규칙'은 계산 기계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에 해당한다.

4) 이 정리에 따르면 F가 일관적이어서 F를 이루는 공리들과 형식적 증명 규칙으로부터는 모순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산수'를 이루는 참인 진술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F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

➡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F에 의해 증명되지 않지만 참에 해당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자.

5)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는 결국 계산 기계에 의해서는 증명될 수 없지만 인간은 그것이 참임을 알 수 있는 산수 진술, 이른바 괴델 문장이 존재한다는 내용인 셈이다.

➡ F에 의해서는 괴델 문장의 참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 기계가 '형식적 증명 규칙'을 사용해서는[→ 3)에서 파악했어야 하는 지점이다.] 그 참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인간은 괴델 문장이 참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주목 결국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는 그 어떤 계산 기계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약한 인공 지능조차 될 수가 없어서, 모든 인공 지능이 부정된다는 뜻이다.

문단 4 괴델 문장

1) **괴델 문장**은 자연수로 보통의 문장을 표기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만든 자기 지시적 문장으로, 괴델 문장 S는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종합했을 때 '괴델 문장'은 F에 의해서는 증명 가능하지 않으나[→ F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적용해도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산 기계는 괴델 문장을 증명할 수 없다.], 적어도 인간은 그 의미[→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그 자기 지시적 성격으로 인해, 만일 S가 F에 의해 증명된다고 가정하면, S의 부정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모순이 도출된다. F가 일관적인 한 S는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괴델 문장 S가 F에 의해 증명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S의 부정, 즉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다.'가 증명된 셈이다. 즉, S와 S의 부정이 모두 증명되는데, 이는 F에 의해 도출되는 모순이다.

➡ 헌데 F가 일관적이라면 그로부터는 모순이 도출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S는 증명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괴델 문장의 참이 확인된다.

3) 그런데 수학자는 이렇게 F가 일관적이어서 S가 증명 가능하지 않다면,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S의 의미로 보아 S가 참임을 안다.

➡ 직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F가 일관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으면 인간은 괴델 문장이 참임을 알 수 있다.

4) 결국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에 따르면 참이지만[→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증명 가능하지 않은 진술이 '산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읽었으면 훌륭하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괴델 문장은 '산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때 인간은 괴델 문장이 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가 일관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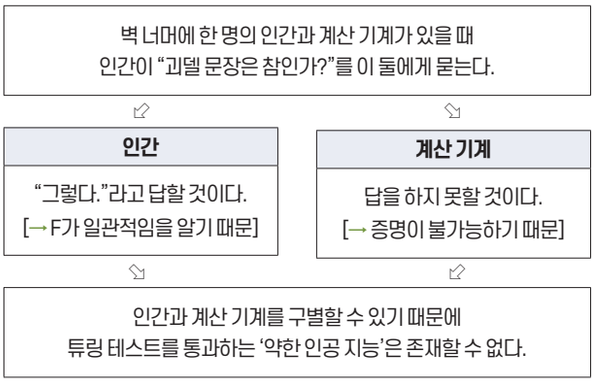
5) 이처럼 인간은 F가 일관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S가 참임을 알지만 그저 F에 대응하여 따라가는 계산 기계는 S의 참을 알지 못한다.

➡ 인간은 괴델 문장의 참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계산 기계는 괴델 문장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참을 알 수 없다. 계산 기계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F의 규칙을 따라갈 뿐이지, 그것이 일관적이라는 점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 따라서 F의 일관성을 토대로 사고할 수 없는 계산 기계는 '약한 인공 지능'조차 될 수가 없다.



문단 5 데이비스의 반박

1) 이에 대해 데이비스는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인정하지만, 그 정리와 인공 지능의 불가능성 논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 데이비스에 따르면 괴델 문장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괴델 문장의 참을 인간만이 알 수 있고, 기계는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2) 그에 따르면 F가 일관적이라는 것이 개별 수학자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의심된다. F가 일관적이라는 믿음이 '직관'과 같은 통찰이라면 그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인간은 'F가 일관적이다.'라는 점을 토대로 괴델 문장의 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직관'과 같은 한 개인의 통찰의 결과라면 'F가 일관적이다.'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 따라서 인간이라면 괴델 문장의 참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과 계산 기계도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답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반면 그 믿음이 [개별 인간의 통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검증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기계에 없는 개별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설령 'F가 일관적이다.'라는 믿음이 오랜 시간을 거쳐, 혹은 다수의 인간이 논의한 끝에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공 지능의 존재 불가능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반대로 기계도 그것을 검증할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가령 아주 오랜 시간이 주어지거나, 여러 기계가 협업할 수 있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괴델 문장의 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는 "괴델 문장은 참인가?"를 물어봤을 때 인간이든 기계든 동일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 즉 인간과 계산 기계가 구별되지 않는다[→ 적어도 '약한 인공 지능'은 존재할 수 있다.].

4) 결국 인간이 기계에 없는 고유한 지적 능력으로 괴델 문장의 참을 안다는 해석[→ 어떤 인공 지능도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데이비스에 따르면 2)의 가정을 택하든 3)의 가정을 택하든 계산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여 '약한 인공 지능'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14~17] 기술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

지문 평가

특정 알고리즘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예시를 통해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요약적인 글이라서 지문의 설명만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략된 맥락을 차근차근 채워 가며 독해해 보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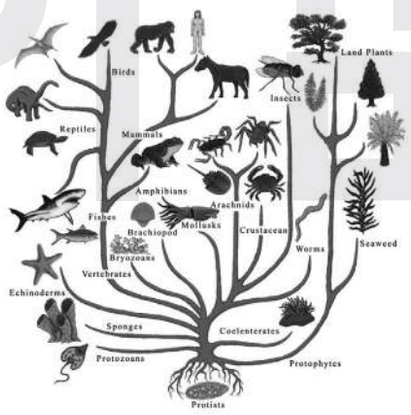
기술 – 컴퓨터 과학 – 계통수 알고리즘

계통수, 유연관계,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 퓨린계, 피리미딘계, 염기 서열 정렬, 유사도,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

문단 1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

1) 분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계통수**는 진화에 의한 생물 종들의 유연관계를 나무에 빗대어 나타낸 그림이다.

➡ '계통수'는 생물의 계통 분화를 연구하는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그림이다. 다음과 같이 맨 아래 하나의 공동 조상을 뿌리로 삼아 분화하는 나무 모양의 그림을 떠올리자.



2) **유연관계**란 발생상의 분류에서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계통수에서 가지에 의해 연결되어 위치가 가까운 종들일수록 형질들이 대체로 비슷하며 유연관계가 가깝다.

➡ '유연관계'란 발생상의 분류에서 가까운 정도이므로, 유연관계가 가까울수록 두 종은 친척 관계에 가깝다.

참고 이때 형질이란 동식물의 모양, 크기, 성질 등 고유한 특징을 가리킨다. 눈동자의 색깔, 다리의 개수, 꼬리의 길이 등이 모두 형질에 해당한다.

3) 과거에는 몇 가지 형질 차이로 유연관계를 정하여 계통수를 그렸는데,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속속 확인되는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 서열들을 분석하여 [유연관계를 정하고] 계통수를 그리는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계통수를 그리는 기준은 생물 종들의 유연관계이므로,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은 DNA 염기 서열을 통해 유연관계를 정하여 계통수를 그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2 DNA의 구조와 염기 서열 정렬

1) DNA는 화학 구조상 **퓨린계**에 속하는 염기인 아데닌(A)과 구아닌(G), 그리고 그보다 크기가 작은 **피리미딘계**에 속하는 염기인 시토신(C)과 티민(T)의 연쇄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DNA에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퓨린계'에 속하는 염기와 '피리미딘계'에 속하는 염기만 구분해서 파악해 두자.

퓨린계	피리미딘계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 퓨린계 염기보다 크기가 작음]

2) 이 사슬에서의 염기 서열에 따라 종의 형질이 결정되므로,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차례의 변이에 의해 서열이 서로 많이 다를수록 종 간의 유연관계가 멀다고 할 수 있다.

➡ 종의 형질은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변이가 발생하면 이러한 염기 서열이 달라지므로, 변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유연관계도 멀어지는 거다.

변이 발생[→ 염기 서열 변화] ⇨ 형질 변화 ⇨ 유연관계 멀어짐
∴ 염기 서열의 차이 ↑ ⇨ 유연관계의 가까움 ↓

➡ 이에 따라 종의 형질이 크게 달라지는 과정 자체가 곧 진화에 해당한다. 바꿔 말해 유연관계가 가까운 종들은 근래에까지 같은 종이었다가 분화된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을 시행하려면 먼저 전체 [염기] 서열에서 비교할 부분인 비교 서열을 정해야 한다. 이때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최초의 변이까지 담고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염기 서열들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 비교 서열로 삼는다. 이와 같이 비교 서열을 찾아 정렬하는 것을 **'염기 서열 정렬'**이라 한다.

맥락 짚기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의 핵심은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유연관계를 정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자[문단1–3)].

➡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을 시행하려면 어떤 부분을 비교 서열로 삼을지 결정하고 정렬하는 '염기 서열 정렬'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 이때는 비교할 종들 간에 최대한 유사하게 나타나는 염기 서열을 비교 서열로 삼는 게 좋다. 작은 차이가 있는 곳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최초의 변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3 유사도와 유연관계

1)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은 비교 서열들이 정렬된 상태에서 두 개의 서열씩 조합하여 각 조합의 유사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염기 서열은 생물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서열씩 조합하여 유사도를 파악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생물 종의 염기 서열을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각 조합의 유사도가 크다면 종 사이의 유연관계도 가까울 거다.

2) **유사도**는 보통 다양한 변수들로 복합적으로 구성한 계산식으로 정한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로는 염기 서열의 무게, 각 염기의 비중, 특정 염기의 개수, 서열에서 염기가 서로 같거나 다른 위치의 개수 등이 있다.

➡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열거되는 정보들은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사실만 파악하고 넘어가자.

3) 가장 단순한 방식의 유사도로는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가 있다. 이는 비교 서열의 각 위치에 동일한 염기가 있는 경우마다 해당 염기의 가중치 값을 더하여 구하는 것으로, 가중치는 DNA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부여한다.

➡ 2)에서 소개한 다양한 요소들에 비하면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는 두 서열에서 '염기의 종류'만을 가중치로 따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단순한 방식의 유사도다.

4) 이 유사도의 경우 피리미딘계가 퓨린계보다 변이가 덜 일어나는 편이어서 종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해당 염기가 퓨린계일 때에는 1[→ A와 G, 가중치 낮음]을, 피리미딘계일 때에는 2[→ C와 T, 가중치 높음]를 더한다.

➡ 가중치 부여의 예시다. 종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염기는 그만큼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셈이다. 문제를 푸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 주의해서 챙겨 두자.

종의 특성 반영 정도 ↑ ⇨ 가중치 ↑

5) 이렇게 얻은 [염기 서열 정렬의] 유사도가 더 큰 조합일수록 두 종의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

➡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정리하고 넘어가자.

조합 간 유사도 ↑ ⇨ 유연관계의 가까움 ↑

문단 4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 방식

종1	A	T	T	G	A
종2	A	T	G	G	C
종3	A	T	G	T	C
종4	G	C	T	A	C

〈표〉

1) 종1~종4에 대해 '염기 서열 정렬'을 한 결과가 〈표〉와 같다고 할 때,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 방식으로 계통수를 그려야 한다고 하자.

➡ 실제 예시를 통해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 방식을 적용해 볼 차례다. 〈표〉는 4개의 종에 대해 차이가 가장 작은 부분을 대상으로 염기 서열 정렬을 한 상태이다[문단2–3)]. 즉 이들을 비교 서열로 삼으면 된다.

➡ 문단3에서 확인한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자. 두 개의 서열씩 조합하여 유사도를 파악하되, 비교 서열의 각 위치에 동일한 염기가 있는 경우마다 가중치 값을 더하면 된다.

➡ 이때 퓨린계인 A와 G는 가중치 1을, 피리미딘계인 C와 T는 가중치 2를 더하기로 했다[문단3–4)].

2) 각 조합에서 가장 큰 유사도는 종2와 종3의 유사도인 6이므로 첫 단계에서는 종2와 종3을 먼저 가지로 연결한다.

➡ 전제하는 내용이 많으니 차근차근 접근하자. 종2와 종3의 유사도를 먼저 구해 보면……

종2	A	T	G	G	C	합계
종3	A	T	G	T	C	
가중치	1	2	1		2	6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조합의 유사도를 하나씩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1-종2	종1-종3	종1-종4	종2-종3	종2-종4	종3-종4
4	3	2	6	2	2
A, T, G	A, T	T	A, T, G, C	C	C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주목 이때 유사도가 가장 큰 종들을 먼저 가지로 연결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를 통해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종들을 먼저 그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유사도가 가장 큰 종2와 종3은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워서, 계통수에서도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 둘을 먼저 가지로 연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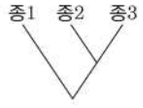


3) 이후 알고리즘은 두 번째 단계에서 [유사도가 가장 큰] 종2와 종3을 하나로 간주하고 유사도를 다시 계산한다. 하나로 묶인 '종2–종3'과 다른 것의 유사도는 종2와의 유사도와 종3과의 유사도의 평균으로 구한다.
➡ 가지로 연결한 종들은 하나로 간주한다는 대목에 주목하자. 이제부터는 '종2–종3'은 하나의 종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종과 다시 한번 유사도를 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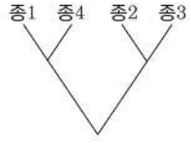
4) 예컨대 종1과 종2의 유사도는 4, 종1과 종3의 유사도는 3이므로, 종1과 '종2–종3'의 유사도는 [4와 3의 평균인] 3.5이다. 그 외에 종1과 종4의 유사도는 2, '종2–종3'과 종4의 유사도는 [종2와 4의 유사도인 2와 종3과 종4의 유사도인 2의 평균인] 2이다.
➡ 2)에서 미리 각 조합의 유사도를 구해 놓았으니, 여기서는 평균만 구해 주면 되겠다. '종2–종3'을 하나로 간주하고 다시 정리해 보자.

종1-(종2-종3)	종1-종4	(종2-종3)-종4
(4+3)/2 = 3.5	2	(2+2)/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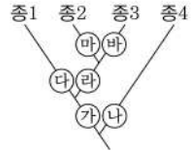
5) 두 번째 단계에서도 유사도가 가장 큰 조합을 가지로 연결해야 하므로, 종1과 '종2–종3'을 연결[→ 유사도 3.5]한다. 만일 이 단계에서 종1과 종4의 유사도가 [3.5보다] 더 컸다면 이 조합이 연결되어 계통수의 모양이 달라졌을 것이다.
➡ 첫 번째 단계인 2)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도 유사도가 가장 큰 조합을 가지로 연결한다. 여기서는 종1과 '종2–종3'을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



➡ 만약 종1과 종4의 유사도가 더 컸다면? 이 경우엔 종1과 종4를 먼저 가지로 연결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 그려진다[→ 〈보기〉 문제에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가지가 그려진다.].



6) 마지막 단계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 것을 연결한다. 그러면 종1~종4에 대한 계통수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 5)에서 그린 계통수에, 마지막 남은 종4를 연결해 주자. 최종적으로 〈그림〉과 같은 계통수가 완성된다.

➡ 이를 통해 종2와 종3의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우며[→ 하나의 가지로 연결되어 위치가 가장 가까우며], 종4는 종1에 비해 이들과 유연관계가 멀다는 점을 그림만으로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문단 5 분기에 영향을 미친 염기 파악

1) 〈그림〉의 계통수를 보면 각 가지의 분기에 영향을 미친 변이가 어떤 염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 〈그림〉에서 각 가지의 분기는 ㉮~㉲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분기가 나타난 것은 변이, 즉 염기 서열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위치의 염기가 서로 다른지를 확인하면, 해당 염기가 어떤 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2) 먼저 ㉮와 ㉯의 분기는 종1, 종2, 종3에서 모두 같은 염기이지만 종4에서만 다른 염기인 것,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염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맥락 짚기 각 종의 비교 서열을 참고해야 한다. 문단4의 〈표〉를 다시 확인하자.
➡ ㉮를 거친 종1, 종2, 종3의 첫 번째 염기와 두 번째 염기는 모두 A와 T다. 이들 위치의 염기는 ㉯를 거친 종4에서 G와 C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종4가 갈라져 나온 ㉮와 ㉯의 분기는 이들 염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종1	A	T	T	G	A
종2	A	T	G	G	C
종3	A	T	G	T	C
종4	G	C	T	A	C

3) ㉰와 ㉱의 분기는 그 외의 염기들 중 종2와 종3에서 같은 염기이지만, 종1에서만 다른 염기인 것, 즉 세 번째와 다섯 번째의 염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 ㉱를 거친 종2, 종3의 세 번째 염기와 다섯 번째 염기는 G와 C다. 이들 위치의 염기는 ㉰를 거친 종1에서만 T와 A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종1이 갈라져 나온 ㉰와 ㉱의 분기는 이들 염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종1	A	T	T	G	A
종2	A	T	G	G	C
종3	A	T	G	T	C

주목 이때 네 번째 염기는 종1과 종2에서 G이고 종3에서 T인데, 왜 이를 기준으로 종3을 따로 분류하지 않느냐고 따지지 말자. 우리는 앞서 유사도에 따라 계통수를 그려 놓았고, 이 과정에서 종2와 종3의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문단4–2].

4) 나머지 염기 중 종2와 종3에서 서로 다른 염기들, 즉 네 번째 염기가 ㉬와 ㉭의 분기를 일으킨 것이다.
➡ 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2와 종3의 염기는 간단히 비교 가능하다. 네 번째 염기가 G인 경우 ㉬로, T인 경우 ㉭로 갈라진 거다.

종2	A	T	G	G	C
종3	A	T	G	T	C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8~30] 현대시

(가) 「고향」 박용철

작품 평가

시의 표현과 그 표현에 담긴 화자의 정서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이 작품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고 농촌은 황폐화되었던 시기에 창작되었음을 고려하면, 식민지 지식인인 시인은 그런 외적인 상황에 부딪혀 정신적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심정을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이겠다.

제 1연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진데[→ 허물어졌는데]
저녁 가마귀 가을 풀에 울고[→ 쓸쓸하고 스산한 풍경]
마을 앞 시내도 옛 자리 바뀌었을라.

➡ 화자는 고향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고향은 이제 일가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무너져 없다. 시내의 자리마저 바뀔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다.

제 2연

어린 때 꿈을 엄마 무덤[→ 상실의 이미지] 우에
남겨 두고 떠도는 구름 따라
멈추는 듯 불려 온 지 여남은 해[→ 외부 상황에 떠밀려 떠돌아다닌 지 10여 년]
고향은 이제 찾아 무얼 하리.

➡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가 '고향은 이제 찾아 무얼 하리'로 변주되고 있다. 제1연에서 현재의 고향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면, 제2연에서는 소중한 것들을 이미 상실하고 방황해 온 처지에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 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 '고향'이 단지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화자에게 있어 삶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공간[→ 잃어버린 순수와 꿈의 공간]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고향을 떠나 살아오면서 현실의 고향도 훼손되고, 화자의 삶 또한 훼손된 상태인 것이다.

제 3연

하늘가에 새 기쁨을 그리어 보랴

➡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현재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면서 화자는 기쁨을 잃어버린 모양이다. 그렇지만 '새 기쁨'을 그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남겨 둔 무엇일래 못 잊히우랴

➡ '못 잊히우랴'는 이제는 고향에 대한 기억마저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고향마저 잃은 마당에 더 못 잊을 소중한 것이 무엇 있겠느냐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모진 바람[→ 시련과 고난]아 마음껏 불어쳐라
흩어진 꽃잎[→ 화자의 처지] 쉬임 어디 찾는다냐.

➡ '흩어진 꽃잎' 같은 화자는 '모진 바람'에게 마음껏 불어치라고 말한다. 이것을 체념과 자조의 의미를 담은 진술로 읽는다면 '바람아 마음껏 불어라. 어차피 떠돌이 인생에 고향마저 훼손되어 버린 세상에서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로, 반어적 의미로 읽는다면 '바람아 그만 좀 불어 다오. 더 이상 쉴 곳이 없어 괴롭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제 4연

혐한 발에 짓밟힌[→ 고향이 황폐했던 이유] 고향 생각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이언만—
서로의 굳은 뜻을 남께 앗긴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라린 심사여라.

➡ 제1연에서 고향이 황폐해 있던 이유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힘에 의해 고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남에게 빼앗긴 '옛사랑' 같은 '쓰라린 심사', 즉 소중한 대상을 잃은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 제1연과 제2연에서 고향에 돌아가 봐야 뭘 하겠느냐고 했던 화자는 제4연에서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꿈에서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1연과 제2연에서 고향에 돌아갈 의미가 없다던 말은, 사실은 옛날의 고향이 너무나 그립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겠다. 자신이 알던 옛날의 고향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며 체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옛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제3연에서 '남겨 둔 무엇일래 못 잊히우랴'라는 표현 역시 고향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1~34] 현대소설

「만세전」 염상섭

작품 평가

출제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작품이다. 지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지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에 주목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일본 유학 중 잠시 귀국하여 부산을 지나가게 된 '나'는 오랜만에 한식을 먹고 싶었으나 시내에 일본식 집밖에 보이지 않자 일본 요릿집에 들어간다. 시중을 들던 일본인 여자 점원들 중 하나가 조선 민요를 부르는 것을 본 '나'는 그에게 조선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어본다.

"얘가 제일 잘해요. 우리는 온 지가 삼사 년밖에 아니 되었지만……."

하며 벙벙히 앉았는 화롯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킨다.[→ '나'가 식당의 방에 들어왔을 때 방에 화롯불을 가져왔던 모양이다.]

"응! 그래? 너는 얼마나 있었길래?"

말담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았는 것이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숫보기(=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로만 생각하였던 것이, 조선 소리[→ 조선 민요]를 잘한다니 조선 애가 아닌가도 싶다.

"예서[→ 여기서] 아주 자라났답니다.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며 담바고 타령(= 담바귀 타령. 담배에 대해 노래한 조선 시대 민요)을 하던 계집애가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입이 재게(=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게) 즉시 대답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 당사자. 화롯불 가져온 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댄다. 그 소리가 너무도 커닿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같이[→ 비웃는 듯한] 들리었다. 일인 애비와 조선인 에미를 가졌다는 계집애는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샐룩하여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다(= 체면이 서지 않고 주눅이 든다)는 모양이다.

➡ 우연히 일본 요릿집에 들어간 '나'는 그곳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일본 여자애들 중 하나가 조선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녀는 어머니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어머니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폭로당한 것을 수치스러워한다.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자, 그러한 차별 의식이 차별받는 당사자[→ 조선인이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 등]에게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대구에 있에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래 어째 여기[→ 부산의 요릿집] 와서 있니?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나름 진지한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다.

➡ 작품의 앞부분에서 '나'는 귀국하는 길에 오르면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여러 차례 목격한다. 또 부산항에 내린 '나'는 몰락해 가는 조선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발된 조선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선인 어머니를 둔 소녀의 사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겠다.

그 계집애는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지 않아두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두 그것도 안 되구…… 천생 언문(= 예전에 한글을 이르던 말)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하며 이번에는 자기 신세를 조소하듯이 마음 놓고 커닿게 웃는다.[→ 어머니와 떨어져 요릿집 점원으로 오게 된 경위가 순탄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럼 아버지[→ 일본인이다.]하군 지금 헤져서[→ 헤어져서]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졌죠. 내가 열 살 적인가, 아홉 살 적에 장기(長崎, 일본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로 갔답니다."

➡ 소녀는 조선에서 아주 자랐다고 했으니, 일본인 아버지는 소녀가 어릴 때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 그 후에는 소식은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다.] 하지만 이 설이나 쇠고 나건 찾아가 볼 테에요."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일을 저지르고 하도 깃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웃음[→ 자신의 기구한 처지에 대한 조소와 체념] 같았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두 길러 낸 어머니가 정다울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찾아간대야 그리 반가워는 아니 할걸?"

➡ 어머니는 비록 조선 사람이더라도 길러 준 정이 있고, 아버지와는 이미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되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소용이 없을 거라고 소녀에게 말해 주고 있다.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 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조선보다는 일본의 문화를 따르면서], 딸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지나서[→ 헤어진 아버지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계산적 판단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칠팔 년이나 된다는 애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 진작 헤어진 일본인 아버지를 별 대책도 없이 찾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제,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엾은 것보다도 그 에미가 한층 더 가엾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 소녀는 부모 모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지만 대구에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려 하지 않는 반면, 일본에 있는 아버지는 설을 쇠고 난 뒤 찾아가 보겠다고 말한다. '나'는 소녀가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일본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일종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녀의 조선인 어머니를 동정하게 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곧 몰락해 가는 조선의 현실과 조선에 대한 차별 의식이 내면화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겠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 '나'는 음식점을 나와 김천으로 가는데, 김천역에 도착하자 형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형님은 실용적이고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으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나'가 문학 공부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 역시 자신은 형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참 동안 잠자코 걷다가, 형님 집으로 들어가는 동구(=동네 어귀)까지 와서 전에 보지 못하던 일본 사람의 상점이 길가로 하나 생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서도 두 집 문에 일본 사람의 문패가 붙은 것을 보고,

"그동안에 꽤 변하였군요!"

하며 형님을 쳐다보니까, 형님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듯이 태연무심히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 동네에 일본인들의 집이며 상점이 늘어난 상황이고 형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나는 앞장을 선 형님을 따라 들어가며 작년보다도 한층 더 퇴락한 대문을 쳐다보고,

"거진 쓰러지게 되었는데 문간이나 좀 고치시지?[→ 못마땅함]"

하며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였다.

"얼마나 살라구! 여기두 좀 있으면 일본 사람 거리가 될 테니까 이대로 붙들고 있다가 내년쯤 상당한 값에 팔아 버리란다. 이래 봬도 지금 시세루 여기가 제일 비싸단다."

➡ 형님은 거리가 온통 일본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어 오래 살지 않을 상황이라, 문간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형님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형님은 칠팔 년 전에 살 때[→ 집을 구입했던 때]와 비교하여서 거진 두세 곱이나 시세가 올랐다고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본 광경[→ 거리에 온통 일본식 집이며 가게가 들어차 있던 광경]을 생각하며,

"그야 다른 물가는 따라서 오르지 않었나요. 전쟁 이후에 어떤 것은 삼 배 사 배나 올랐는데요."

하고 대꾸를 하며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 삶의 터전이 잠식당하고 파괴되어 가는 조선의 현실과, 땅값, 집값이 오르면 좋은 값에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듯 이익을 볼 생각에만 골몰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